

##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심의기관  | 정읍시   | 심의일자                  | 2026. 3. 31.(화)                    |
| 통합심의 분야   | 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축주   | 성명(법인명) 대라수주택(주) 외 1명(대라수건설(주))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지현황  | 대지위치 : 정읍시 연지동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지번 361-1번지  | 관련지번 : 연지동 361-1번지 일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대지면적 : 12,816 m <sup>2</sup>  | 용도지역(지구, 구역) : 일반상업지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축물현황   | 건축면적 : 6,982.2255 m <sup>2</sup>  | 건폐율 : 54.4805%        | 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26층               |
|   | 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   | 구조 철근콘크리트             | 건축물 세대수(호)/동수 : 517세대(호)/4동        |
|   | 최고높이 : 85.85m   | 용적률 : 529.6714%       | 연면적 합계 : 99,835.3958m <sup>2</sup> |
| 구 분   | 주요 심의 내용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건축)분야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전조치이행계획을 반영할 것</li> <li>- 구조심의 시 관련도서 및 산출서 제출할 것</li> <li>- 스카이브릿지 구조관련 안전성 검토 및 하부층 일조권 침해여부를 검토할 것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도시계획) 분야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출입구 진입도로 횡단면도상 E-E' 구간 편측 길어깨(0.5m이상) 확보하는 방법 검토할 것</li> <li>- 교통섬 내 횡단보도를 2개소로 나눠서 설치하지말고 직선으로 1개소 통합운영하는 방법 검토할 것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경관)분야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상조경 속성수(교목) 식재를 배제하는 방법 검토 할 것</li> <li>- 지하주차장 wallplan 동출입구 안내 텍스트(p.98/6번) 색채계획 변경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7.WYR 6.33/ 6.83)으로 변경하는 방법 검토</li> <li>• 명도차가 커 시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- 시설물의 형태 및 마감재를 통일 할 것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심의결과  | 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거조문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| <p>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</p> <p>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</p> <p>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p> <p>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p> <p>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성방법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</p> <p>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</p>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